교 회 정 관

SINNAE METHODIST CHURCH

Since 2016

교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신내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SINNAE METHODIST CHURCH라 한다.

제2조(소재지) 교회는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40에 둔다.

제3조(목적)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흥·성장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범위)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을 규정하며 [교리와 장정]에 위배될 수 없으며 이 외의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① 교인
② 집사
③ 권사
④ 장로
⑤ 각 부서 및 특별위원회
⑥ 당회
⑦ 임원회
⑧ 기획위원회
⑨ 구역회
⑩ 구역인사위원회
⑪ 자치기관
⑫ 교회학교
⑬ 찬양대
⑭ 재정 및 재산

제2장 교회의 조직

제1절 교인

제5조(교인) 교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 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 때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쓴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배서(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제6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제7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 : 교인들이 주일 및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그 순서는 예문에서 정한다.
② 속회 :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 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 를 이루는 모임
③ 기도회 :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지 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
④ 가정예배 : 가족들이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
⑤ 사경회 :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 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
⑥ 부흥회 :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

제8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⑩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 다.

제9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교인에 대한 재판 및 복권)
① 교인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심사 및 재판을 받는다.
②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제2절 집사

제11조(집사의 자격)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제12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11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③ 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3절 권사

제14조(권사의 정수)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가정복음화)된 이로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목사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증서나 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사의 선출)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5조(권사의 자격) ①~⑥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목사가 증서를 준다.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 담임목사는 이명증서를 이명해 가는 교회의 담임자에게 송부한다.

제17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제4절 장로

제18조(장로의 정수) 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9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

②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④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받아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제20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한 이

②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제21조(장로의 안수집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안수 받을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제22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목사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목사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제23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교리와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목사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 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나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목사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제24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다만,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할 수 없다.

② 담임자가 정기 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 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할 수 있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의 교회로 이명 하려면 담임자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감리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장로 증서를 받은 후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파송한다.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 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에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장로는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70세(2월 말일을 기준)가 된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제26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

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3장 개체교회 사역자와 교역자

제1절 개체교회 사역자

제27조(개체교회 사역자) 교회는 개체교회 사역을 위해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를 두며, 그 직무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6절 개체교회 사역자]규정에 따른다.

제28조(개체교회 직원) 교회는 개체교회의 목회와 일반 업무처리를 위해 개체교회 사역자를 두되,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직원을 임면하다.

제2절 교역자

제29조(교역자) 교회는 구역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파송 받은 이로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및 기타 교역자를 두되 성직 안수 받은 이는 정회원 목사, 준회원 목사,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전도사(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기관에 파송 받은 이)로 호칭하며, 그 직무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제8절, 제9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담임자) 담임자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행정책임자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의 당회, 임원회와 기획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담임자의 유고시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담임자가 없는 경우 장로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의회 및 각 행정부서

제31조 교회 안에 의회로서 당회, 구역회, 구역인사위원회와 교회 행정을 위해 7개 부서(선교국, 교육국, 사회봉사국, 예배국, 문화국, 재무국, 관리국)와 감사를 두고 당회에서 위임한 특별업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관련 규정과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른다.

제1절 당회

제32조(당회)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하며, 출석한 회원수를 개회 정족수로 한다.

제33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세례받은 입교인

② 감리교회 연회원으로 교회에 파송 혹은 소속된 교역자

제34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제35조(당회의 소집 및 통지)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13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당회 의장)

①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된다.

②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당회 의장의 직무) 담임자는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38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제39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 의장의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보존한다.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의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41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인 이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헌금이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제42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제43조(발언과 의결권) 당회 회원은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발언 및 결의권이 있으나 가족에 대한 인사 표결에서는 배제된다.

제44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띄어쓰기) 속장 1명을 선출 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3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목사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⑬ 당회는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⑭ 당회는 교회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제45조(의결방법) 당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6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20조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에 따른다.

제2절 임원회

제47조(임원회) 교회는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 둔다.

제48조(임원회의 조직)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회원으로 조직한다.

제49조(임원회 의장) 임원회의 의장은 담임자가 된다.

제50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임원회는 담임자가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 소집 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도 1주일 전에 교회 주보와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51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그 밖에 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제52조(임원회의 결의)

① 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회의 의장인 담임자 제외한다.

제3절 기획위원회

제53조(기획위원회)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54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 순으로 7명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제55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기획위원회는 필요 시 담임자가 소집한다.

제5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제4절 구역회

제57조(구역회) 교회 안에 구역회를 둔다.

제58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임시 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③ 구역회 개회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 장, 당회 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된 교역자 연회회원

제60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지방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시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의장이 된다.

제61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토록 한다.

제62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 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재판하기 위해, 감리사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⑥ 구역회는 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제63조(구역회의 절차 및 결의)

① 구역회의 사무처리 절차는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35조 구역회 사무처리 순서]에 따른다.

② 구역회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절 구역 인사위원회

제64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5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한다. 단, 부담임 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된다.

제66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지방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안건이 감리사 자신의 문제인 경우엔 해당 연회 감독이 의장이 된다.

제67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8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할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 소집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인사처리 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인사처리 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부담임목사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0조(의결 제척 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및 재산

제71조(재정)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과 교회 사업을 위한 의무금으로 하며, 의무금은 매년 당회에서 정한다. 교회의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정한다.

제72조(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과 결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는 당회에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는 변동이 가능 하나 12개월을 포함한다.

제73조(재산관리)

①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된 구역회의 결의로 취득, 처분, 담보 제공, 및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기본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등록하며, 매각, 이전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동에 대한 처분을 위한 결의는 구역회에서 한다.

제6장 보 칙

제74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 교회 정관, 규칙 등의 제정, 개정안은 담임자나 해당 부서장이 부서의 토론을 거쳐 발의하며, 기획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당회에서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한다.

제7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통상 규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2월 14일 (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내교회

담임목사 김 광 년